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9. 25-----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9. 25

다. 상정일자 : 제1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3. 10. 13)

2. 제안설명요지(장일룡 총무과장)

가. 제안사유

2003년 8월 31일부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무상한연령 연장개정을 요구하는 고용직공무원 및 직장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하므로써 해당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7세”로 함.
(안 별표)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고용직공무원이란 일반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과 구별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중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는 과거 경찰소속의 방법원을 각 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사항으로 방법원 임용시 연령제한이 53세로 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 까지 계속되었으며

- 2003. 8. 31일부로 구조조정이 완료되어 고용직이 사하구 정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일반직공무원의 연령제한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부산시 각구의 정년제한이 대체로 57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보조를 맞추어 주므로 해당직원의 사기를 양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